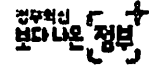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지방병무청



수신 병역지정업체의 장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치 사항 및 복무관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가. 병무청 산업지원과-390(2020.1.23.)"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 조치 관련 강조사항 알림"
- 나. 병무청 산업지원과-432(2020.1.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추가 알림"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병역지정업체의 조치사항 및 산업지원인력의 복무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조치사항

1) 중국 입국자

- 참복기간(14일) 미경과자 병가 처리 적극 권고
- 의심자 발생 시 즉시 통보(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병무청)
- 병가기간 30일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
-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초과시도 복무기간으로 인정 준용

2) 일반 복무자

- 감염 예방활동
 - o 업체 특성에 맞는 예방 조치 활동 강화(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 o 퇴근 후 다중이용시설 가급적 이용 자제 당부
 - o 해외여행 등 출국 후 입국한 요원에 대한 증상유무 확인 철저
 - o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www.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

기

- 감염 의심시 조치사항
 - o 가까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 o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쓰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

료

- 감염자 등에 대해서는 병가처리

- 감염 확진자(확진검사 포함) : 완치까지 기간
- 감염 격리자(본인 또는 가족): 완치까지 기간

나. 통보체계 유지

- 1) 병역지정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격리 대상으로 판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는 이를 신속히 해당 지방병무청에 통보.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질병관리본부)1부. 끝.

서울지방병



연구지원계획

모조

임소연

계장

한기향

과장

전임 2020.1.31.

조병구

협조자

시행 산업지원과-1050

(2020. 1. 31.)

전수

우 073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 <http://www.mma.go.kr>

전화번호 02-820-4493

팩스번호 02-820-4151

/ griggrig@korea.kr

/ 비공개(7)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익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